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12,873,175	54,386,195
일반회계	1,463,508,302	43,905,249
특별회계	349,364,873	10,480,946
공기업특별회계	264,696,848	7,940,90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952,692	2,968,58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512,145	2,685,3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6,232,011	2,286,960
기타특별회계	84,668,025	2,540,041
주택사업특별회계	3,634,888	109,04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883,901	146,51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36,909	13,10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547,688	196,431
교통사업특별회계	21,455,314	643,659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2,761,657	682,85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4,947,668	748,43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117,89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